

	회 장
상근부회장	고치환
고재윤	

#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6. 12. 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6. 12. 20(화) 17:00 ~ 17:50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소회의실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15명 중 13명 참석(감사 1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3명) : 고치환, 안근보, 송옥희, 이연봉, 김금자, 김순실, 김순호, 박영식, 박정해, 양광호, 양은심, 이흥기, 김문국(휴원)

나. 감사(1명) : 윤두호

###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사무국장의 성원보고 후 고치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5. 의장인사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제6대 임원 임기도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며 지난 3년동안 여러 이사님들의 도움으로 회장직을 큰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하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은 좀더 노력하고 잘되었던 부분들은 더욱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앞으로의 3년임기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회장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하다.

### 6. 전차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사전에 회의자료가 배포되어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별도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박정해 부회장 : 원안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전차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 7. 업무보고

- 의 장 : 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업무보고를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정관 및 제규정 정비 추진계획, 제7대 회장 등 임원선거 비용 정산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다.

- 의 장 :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의안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다

## 8. 부의안 심의

### 가. 부의안 채택

- 의 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 개정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 개정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 나. 부의안 상정

- 의 장 :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채택된 심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제안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제1호 ~ 제2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 장 : 사회복지협의회 김성건 사무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지시하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개정안,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하다.

- 의 장 : 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대한 이사들의 질의토론을 요청하다.

- 박정해 이사 : 지난번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수를 15명으로 축소 시켰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혹시 이사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사안이 사회복지

지사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묻다.

- 김성건 사무국장 : 지난 정관개정 사유는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에 임원의 수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있는 부분을 제주도에서 그 정수를 정확히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 그 최소 인원인 15명으로 그 수를 정하였다고 설명하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되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다.

- 의 장 : 정관개정을 하는 이유는 지난 6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서는 좀더 많은 분들을 임원으로 참여시키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했었다며 그러한 이유로 임원의 수를 증원하고자 한다고 하다.

- 휴 완 이사 : 지난번 임원의 수를 줄였던 부분은 그 당시 여건에 맞추어져 이뤄진 사안이고 지금은 회장님께서 지난 3년간 활동하시면서 부족하다고 느껴오신 부분이고 앞으로 7대 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어보인다며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적인 부분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회장님이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힘을 실어 드리는 의미로 동의한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임원의 수를 늘리는것은 사무처에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이사수에 비해 부회장 숫자가 7명은 좀

많지 않은지 생각한다 고 하다.

- 윤두호 감사 : 임원수를 증원하는 사항은 제7대 회장 선거 당시 회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으며 선거공약을 지키는것 또한 회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회장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동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고 총회에서 이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을때에는 충분히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안근보 부회장 : 사무국에서는 오늘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이 처리되더라고 총회에서 다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총회에서 좀 더 명분있게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다.
  
- 의 장 : 제주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임원수를 증원하는 것이므로 이사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다.
  
- 박정해 이사 : 정관개정안에 대한 원안동의하다.
  
- 의 장 : 박정해 이사의 원안 동의가 있었다며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상정된 제1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정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의 장 : 제2호 의안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인사규정 개정안 중 인사위원장의 경우 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해오던 것을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현행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안 동의하다.

- 양광호 이사 : 인사규정 개정안 중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서 상근부회장과 복지관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관장이나 아라어린이집 원장이나 같은 산하기관의 장인데 아라어린이집 원장이 인사위원에 당연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당연직 인사위원에 아라어린이집 원장도 포함하도록 수정하기를 요청하다. 인사위원장의 경우 통상 부기관장이 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므로 동의한다고 하다.

- 의 장 : 더 이상 안건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상정된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안 중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만 양광호 이사가 제시한 인사위원 구성을 당연직 위원으로 아라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며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상정된 제2호 의안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직운영규정 개정

인사규정 개정안 중 인사위원 구성에 아라어린이집 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9. 기타사항

- 의 장 : 기타사항으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다.
- 윤두호 감사 : 최근 읍면지역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를 포함해 직원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별도의 교통비와 같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기관 등에 요청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현재 아동보육교사의 경우 농어촌지역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등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휴완 이사 : 몇 년 전에 노인요양원의 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된바 있었었다고 하며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하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데 소극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안근보 부회장 : 제주도노인복지협회의 경우 몇 년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지속



적으로 늦어준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지원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내년 정도에는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  
각한다고 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만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협력해 간다  
면 좀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다.

- 의 장 :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하다.
- 의 장 : 더 이상의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사항에 대한  
논의 종결을 선언하다.

## 8. 폐 회

- 의 장 :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  
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박영식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 장 : 2016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7:50)

2016년 10월 20일

회장: 고 치



부회장: 안 근



이사: 김 금



박 영



양 인



확인자: 고 경



기록: 김 성



이 연



김 순



박 정



이 흥



송 우



김 순



양 광



류 원(김)

